

Joint Replacements

Trauma, Extremities & Deformities

Craniomaxillofacial

Spine

Biologics

Surgical Products

Neuro & ENT

Interventional Spine

Navigation

Endoscopy

Communications

Imaging

Patient Care & Handling Equipment

EMS Equipment

부당 지급

기업 정책 번호 12

Copies of all Corporate Policies
may be found on
www.stryker.com/corporatepolicies

2825 Airview Boulevard
Kalamazoo, MI 49002
t: 269 385 2600 f: 269 385 1062

Policy Date: 07/01/09

www.stryker.com



목적:

회사의 부당 지급 금지에 대한 추가 지침 및 안내를 제공하기 위함.

적용범위:

이 정책은 Stryker Corporation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자회사의 모든 직원, 임원 및 대리인(agents)에게 적용된다.

세부사항:

1. **배경** Stryker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기업 정책 번호 1은 “회사 및 이의 직원 및 임원은 정부 또는 비정부 공무원, 직원, 고객, 개인 또는 실체(entities)에게 부당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회사나 회사의 직원 및 임원도 공급업체(suppliers), 고객 또는 회사와 사업관계를 원하는 그 누구로부터 부당한 지급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부당 지급 정책, 기업 정책 번호 12는 부당 지급을 행하거나, 제안, 수락 또는 요구하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는 것에 대해 추가 지침 및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본 정책을 위한 용어:

- a. “보건의료전문가”(health care professional, 이하 “HCP”)이라 함은 Stryker가 판매, 임대 또는 유통하는 제품을 구매, 임대, 권장, 사용, 구매 또는 임대를 주선, 또는 처방하는 개인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 b. “공무원(official)”이라 함은 정부 또는 이의 모든 부처, 정부기관(agency), 또는 정부대행기관, 또는 공공 국제 조직의 모든 간부 또는 직원, 또는 모든 정부 또는 부처, Agency 또는 정부대행기관, 또는 모든 공공 국제 조직을 대신하여 공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c. “지급(payment)”이라 함은 현금, 접대, 교통, 식사, 음식, 현금-상당물, 기증, 또는 기타 서비스 또는 선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을 주거나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 공무원 또는 관련인에 대한 지급.** Stryker 직원은 어떤 사람의 사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Stryker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공무원 또는 관련인 또는 정당 또는 정당 공무원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을 제안, 승인 또는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금지는 Stryker 직원이 직접적으로 또는 Stryker 에이전트, 대리점, 컨설턴트, 파트너, 브로커, 대리인(representative),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행된 지급 또는 제안 또는 지급 승인에 적용된다.

4.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급** Stryker 직원은 Stryker가 판매하고 유통하는 의료기기를 구입, 임대, 권장, 사용,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한 주선, 또는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전문인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HCP에 대한 지급은 모든 해당 법률, 규정, 윤리 규범 및 지침, 그리고 Stryker의 정책 및 절차에 준수해야 한다. 이 금지는 Stryker 직원이 직접적으로 또는 Stryker 에이전트, 대리점, 컨설턴트, 파트너, 브로커, 대리인(representative)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행된 지급에 적용된다.

5. 공급업체(suppliers) 등으로부터의 지급 또는 선물.

a.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선물.** Stryker 임직원은 공급업체 또는 Stryker와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미화 75달러를 초과하는 식사나 음식, 의복, 교통 또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급이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수령자의 비즈니스 결정에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지급이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Stryker 임직원은 금액을 불문하고 입장권(스포츠 경기, 연극 등)이나 향응(entertainment) 등을 위한 어떠한 지불이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 b. **허용되는 선물.** Stryker 임직원은 공급업체 또는 Stryker와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자로부터 일신상의 중요 행사(경조사)(출산, 결혼, 사망 등)와 관련된 간소한(modest) 선물이나 계절 선물 바구니/명절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단, 계절 선물 바구니/명절 선물은 그 품목을 소속 부서나 업무 그룹과 함께 나누거나 자선단체(무료 급식소, 쉼터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Stryker 임직원은 또한 현재의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업무 관련된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다. 단, division head and/or functional vice president로부터 참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c. **Stryker 직원의 간청** 어떠한 경우에도 Stryker 직원은 공급업체, 고객, 또는 Stryker와 사업관계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급을 간청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규정 준수(Compliance).** Stryker Corporation의 모든 직원과 임원은 본 부당 지급 정책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각 Stryker 부문을 담당하는 사장 또는 임원은 직원이 본 정책을 알고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도 포함될 수 있는 회사가 부과하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 정책 또는 특정한 지급 또는 선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Stryker의 내부감사 및 Compliance 부사장, 고문번호사 또는 부고문번호사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